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7월 13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선교의원)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

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으로, 과수화상병 등의 병해충 방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병해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해충 이용시설의 기준, 안전관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한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을 별도로 마련하며, 방제 대상 병해충의 범위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